시 보

선	기관의 장
<u>.</u>	
람	

all ways INCHEON

제1844호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2020년 5월 13일 수요일

공 고	
 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-1196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등록 공고	2
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-1207호 공시송달 공고	3
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-1214호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 공고·열람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5
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-1217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공청사) 결정(신설)(안) 공고·열람 ···········	7
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-1218호 공시송달 공고(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)…	9
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-1219호 공시송달 공고(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)…	12
입법예고 ○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-57호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○ 입법예고	15

발행 : 인천광역시 편집 : 대변인실

회



공 고

인천광역시공고 제2020-1196호

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등록 공고

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5월 11일

인 천 광 역 시 장

구 분	등록업종 (등록번호)	상호 및 대표자	영업소재지	양도· 양수일
양 도 인	정보통신공사업 (제201314호)	㈜밀로텍 최충식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93, 316호(영등포동7가, 남양빌딩)	2020.
양 수 인	정보통신공사업	주식회사 휴인텍 박소희	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13, 월드텔 909호(계산동)	5. 8.

인천광역시공고 제2020-1207호

공시송달공고

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체납차량을 공매처분 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공매통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. 5. 11.

인 천 광 역 시 장

- 1. 제 목 : 압류자동차 공매통지(제2020-1118호)
- 2. 공고기간 : 2020년 5월 11일 ~ 2020년 5월 26일까지

3. 공시송달 내용

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차량소유자 및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,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가주합니다.

※문의처 :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자동차공매 담당 주무관 박은영(☎ 032-440-8445)

공시송달 대상자

연번	성 명	주 소	공매물건	반송사유	비고
1	(주)레**프앤아이대부	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 2*6 , *층(묵동, ***스테이트)	57너 1322	이사불명	
2	(주)디*비캐피탈	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* , *층(도곡동, **엔지니어링사옥)	26더 1943	이사불명	
3	(주)씨**이테크	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3*, *동(가좌동)	90로7503	수취인불명	
4	이*영	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73번길 1* , **4호(청학동,*원주택)	860 1541	수취인불명	
5	김*석	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1*2 (효성동)	68대7446	수취인불명	
6	주식회사 신*전자	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암대로 797, 3**호(동춘동)	60더6067	수취인불명	
7	(주)남*	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 1*-* (가좌동)	36서6325	수취인불명	
8	솔***원경매 주식회사	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573번길 2*, **9-1 (효성동,**아파트상가동)	36도6748	이사불명	
9	이*준	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483번길 15-1*, 1**동 **1호(선학동, 정*주택)	35로8617	수취인불명	
10	(주)엠*이소프트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793번길 5*, **5호 (주안동)	31019096	수취인불명	
11	조*진	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1*, **4호 (계산동,**오피스텔)	23너5052	수취인불명	
12	최*철	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9*, 1**2호 (청라동,**레이크뷰)	13012741	이사불명	
13	정*용	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**, **4호 (논현동)	03우1121	수취인불명	
14	문*환	충청남도 당진시 미락2길 3*, **3호 (합덕읍,서*빌)	인천31무5534	수취인불명	
15	(주)스**이 오토텍	*이 오토텍 인천광역시 서구 사렴로9번길 ** (경서동)		수취인불명	
16	김*종	경상남도 사천시 샛담1길 11-**, **4호(향촌동)	26오2447	이사불명	
17	(주)삼*여행사	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**5 (구산동)	20오7500	수취인불명	

인천광역시공고 제2020-1214호

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 공고·열람

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5. 13.

인 천 광 역 시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487-20 (옥 죽 동)
-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421-1 (선 진 동)
-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1254-1 (모래울동)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: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
- 명칭: 대청도 해수담수화시설

3. 사업의 면적 및 규모

- 옥죽동 해수담수화시설
 - 면적: 1,430㎡, 시설용량: 370㎡/일, 연면적: 설비동 410.49㎡
- 선진동 해수담수화시설
 - 면적: 640㎡, 시설용량: 180㎡/일, 연면적: 설비동 202.21㎡, 폄프동 16㎡
- 모래울동 해수담수화시설
 - 면적: 743㎡, 시설용량: 50㎡/일, 연면적: 설비동 148.59㎡

4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: 인천광역시장(상수도사업본부장)
- 주소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
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착수예정일: 실시계획고시일
- 준공예정일: 고시일로부터 12개월
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.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· 권리자의 성명 · 주소
 -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
 - 옥죽동

			-1	면	적	토지소	:유자		관계인]	
연 번	소재지	지번	지 목	공부상 면적(㎡)	편입 면적(㎡)	성명 또는 명칭	주소	성명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비 고
	합 7	1		4,875	1,430						
1	대청면 대청리	487-19	제	1,429	597	국(국토교통부)					
2	대청면 대청리	487-20	유	3,446	833	국(국토교통부)					

- 선진동

۸,			1	면	적	토지소	유자		관계인	[)
연 번	소재지	지번	지 목	공부상 면적(㎡)	편입 면적(㎡)	성명 또는 명칭	주소	성명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고
	합 7	1		14,828	640						
1	대청면 대청리	421-1	체	14,828	640	공(옹진군)					

- 모래울동

٠,			1	면	적	토지소	유자		관계인		
연 번	소재지	지번	지 목	공부상 면적(㎡)	편입 면적(㎡)	성명 또는 명칭	주소	성명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비 고
	합 7			2,758	743						
1	대청면 대청리	1254-1	학	2,758	743	공(옹진군)					

- 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: 해당 없음
- 8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 -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 - 의견제출: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9. 열람 장소
 - 인천광역시청(시설계획과, 032-440-1712, 연수구 갯벌로 12)
 - 인천광역시 옹진군청(도서주거개선과, 032-899-3914,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)
- 10. 관계도서: 게재 생략(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)

인천광역시공고 제2020 - 1217호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공청사) 결정(신설)(안) 공고·열람

도시관리계획 [도시계획시설: 공공청사(인천소방학교)] 결정(신설)(안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5. 13.

인 천 광 역 시 장

- 1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공청사) 결정(신설)(안) 주요내용
 - 위치: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206-1 일원
 - 결정 내용

가.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(신설)(안)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	위 치		면 적(m²)		최초	비고
1 1	기현정	종 류	FI (기정	변경	변경후	결정일	비끄스
신설	공공 청사	인천 소방학교	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206-1 일원	_	29,964	29,964	_	

나.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(신설)(안) 사유서

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공공청사 (인천소방학교)	○ 공공청사 신설 - 면적: 29,964㎡	○소방교육 훈련시설 설치 의무화 법적 준수 및 기존 교육훈련장 협소에 따른 소방학교 이전 필요 ○소방교육훈련 여건 개선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정예 소방관 양성과 시민안전 체험교육을 확대하기 위함

2.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-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- 의견제출
 -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공청사) 결정(신설)(안)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3. 열람 장소

- 인천광역시청(시설계획과, 032-440-1702,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504호)
- 인천광역시 강화군청(도시개발과, 032-930-3807,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)
- 4. 관계도서: 게재 생략(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)

인천광역시공고 제2020-1218호

공시 송달공고

(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)

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, 제4항의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미신고 국제물류주 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[별표2]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년 5월 13일 **인 천 광 역 시 장**

1. 처분대상업체

연 번	등록 번호	업체명	대표자	법인주소	예정된 행정처분 원인
1	320	대진로지스틱스㈜	서우석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261번길 23 (도화동)	등록기준미달(보험미갱신) (보험만료일:2020.3.20.)
2	464	네이비스㈜	김종혁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중로 9, 904호(숭의동, 로터리빌 딩)	등록기준미달(보험미갱신) (보험만료일:2020.3.30.)
3	473	㈜리더스해운항공	편은주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 드로 78, 502호(연희동, 딜라 이트타워1차)	등록기준미달(보험미갱신) (보험만료일:2020.4.20.)
4	541	다솜로지스틱㈜	신상연	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6, 에 이동814,815호(신흥동3가, 정광씨팰리스)	등록기준미달(보험미갱신) (보험만료일:2020.4.21.)
5	617	㈜티와이인터내셔널	전만수	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6, 에이동 1411호(신흥동3가, 정광씨팰리스)	등록기준미달(보험미갱신) (보험만료일:2020.4.25.)
6	664	주식회사 와이드원	윤영숙, 이강석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 로16번길 13-18, 706호 (송 도동, 송도건원테크노큐브)	등록기준미달(보험미갱신) (보험만료일:2020.3.21.)
7	671	한운해운항공 주식회사(HANUN CARGO LOGISTICS.CO.,LTD)	박범찬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 로 30, 디동 702호(송도동,송 도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)	등록기준미달(보험미갱신) (보험만료일:2020.4.11.)
8	673	주식회사 알라딘지니	이용희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101, 401호(용현동, 넥스빌)	등록기준미달(보험미갱신) (보험만료일:2020.4.10.)
9	729	주식회사 지엘물류	한정	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6, 비동 1005호(신흥동3가, 정 광씨팰리스)	등록기준미달(보험미갱신) (보험만료일:2020.3.15.)
10	730	주식회사 제이앤제이로지스틱	이학준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남 로 29, 301호(용현동)	등록기준미달(보험미갱신) (보험만료일:2020.3.18.)
11	734	주식회사 트레이드	정민혁	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56-18(신흥동3가)	등록기준미달(보험미갱신) (보험만료일:2020.3.29.)

12	736	주식회사 썬로지스	김보철	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00, 118호, 119호, 120호 (청라동, 청라호수공원프라 자)	등록기준미달(보험미갱신) (보험만료일:2020.3.31.)
13	741	주식회사 서강글로벌	나미화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, 이동 905호(송도동, 송도비알씨스마트밸리 지식산 업센터)	등록기준미달(보험미갱신) (보험만료일:2020.4.24.)
14	768	㈜용성로지스틱스(YO UNG SUNG LOGISTICS Co.,Ltd.)	염명등	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41번길 24(항동1가)	등록기준미달(보험미갱신) (보험만료일:2020.4.24.)
15	380	㈜위드트랜스	김부순	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 앙로 93	등록기준미신고 (신고기한:2020.4.6.)
16	601	와이비㈜	임재관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 로29번길 16, 105동 606호 (용현동, 인천용현엑슬루타 워)	등록기준미신고 (신고기한:2020.3.25.)

- 2. 예정된 행정처분 : 1차 위반 경고
- 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 -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(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)미달
 -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
- 4. 처분근거 :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[별표2]
- 5. 의견제출
 - 제출기한 : 2020년 5월 29일 18:00 까지
 - 장 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, 1410호 해양항만과 (송도동, 미추홀타워)
 - 담 당 자 : 해양항만과 이환빈 (032-440-4843)

6. 유의사항

- 서면(별지 11호 서식),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.
- <u>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</u> 간주합니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행정절차법 시	시행규칙 [별지 제11호	호서식] <개정 2014.7.28> 의 견 제 출 서	
※ 이래의 유의사항	을 읽고 작성하시기 비랍 성명		
의견제출인	주소		전화번호
	① 예정된 처분	·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 주소	
의견제출 내용		(전화번호)
	의 견		
	기 타		
「행정절차	·법」 제27조제1	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	의견을 제출합니다.
			년 월 일
		의견제출인	(서명 또는 인)
인 천 광 	· 역 시 장	귀하	

유의 사항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공고 제2020-1219호

공시 송달 공고

(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)

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, 제4항의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미신고 국제물류주 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[별표2]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> 2020년 5월 13일 **인 천 광 역 시 장**

1. 처분대상업체

연 번	등록 번호	업체명	대표자	법인주소	예정된 행정처분 원인
1	535	베스트아이엔씨코리아㈜	첸니	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20번길 13-17 2동(원창동)	등록기준미달(보험미갱신) (보험만료일:2019.12.11.)
2	703	정상물류㈜	이점수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4, 404호(숭의동, 라하프빌딩)	등록기준미달(보험미갱신) (보험만료일:2019.10.14.)

- 2. 예정된 행정처분 : 2차 위반 사업정지 30일
- 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 -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(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)미달
 -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
- 4. 처분근거 :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[별표2]
- 5. 의견제출
 - 제출기한 : 2020년 5월 29일 18:00 까지
 - 장 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, 1410호 해양항만과 (송도동, 미추홀타워)
 - 담 당 자 : 해양항만과 이환빈 (032-440-4843)

6. 유의사항

- 서면(별지 11호 서식),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.
-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행정절차법 ᠕	시행규칙 [별지 제11호	^{호서식] <개정 2014.7.28>} 의 견 제 출 서						
※ 이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
	성명							
의견제출인	주소		전화번호					
	① 예정된 처분	- -의 제목						
		성명(명칭)						
	당사자							
		주소						
의견제출		(전화번호:)					
내용								
	의 견							
	기 타							
	71 -1							
'앵성설자	t멉」 세27조세1	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	건눌 세술압니다.					
			년 월 일					
		의견제출인	(서명 또는 인)					
인 천 굉 	역 시 장	귀하						

유의 사항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

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-57호

「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「인천광역시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5월 13일 인천광역시장

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가. 창업 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어,
- 나. 종전「과학기술기본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내용으로「중소기업 창업 지원법」(법률 제16524호, 2019. 8. 20. 일부개정, 2020. 2. 21. 시행)과 같은 법 시행령 (대통령령 제30436호, 2020. 2. 18. 일부개정, 2020. 2. 21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를 법령과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술창업 활성화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(안 제1조)
 - 1) 제1조 중 "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6조의4제3항"을 "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4조의7제2항"으로 개정

- 나. 창조경제혁신센터 행정지원의 근거(안 제2조제1, 2항)
 - 1) 제2조제1항 중 "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」(이하"영"이라 한다) 제24조의4제4항"을 "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(이하"영"이라 한다) 제5조의7제3항"으로 개정
 - 2) 제2조제2항 중 "제24조의4제3항"을 "제5조의7제2항"으로, "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6조의4제1항"을 "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4조의7제1항"으로 개정
- 다.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등 지원의 근거(안 제3조제1항)
 - 1) 제3조제1항 중 "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6조의4제4항"을 "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4조의7제4항"으로 개정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(참조: 청년정책과장, 주소: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, 전화: 032-440-4173, 팩스: 032-440-8695, 전자메일: abehiroshi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 · 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참고사항

- 가.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나. 신・구조문대비표
- 다.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- 라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 중 "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6조의4제3항"을 "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4조의7제2항"으로 한다.

제2조(행정지원 등)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제1항 중 "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4조의4제4항"을 "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조의7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24조의4제3항"을 "제5조의7제2항"으로 하고, "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6조의4제1항"을 "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4조의7제1항"으로 한다.

제3조(출연금 등의 지원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6조의4제4항"을 "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4조의7제4항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의 기술	제1조(목적)
창업을 활성화하고, 중소・벤처기업	,
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하기 위하여	
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6조의4제3	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4조의7
<u>항</u> 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	<u>제2항</u> 에
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	
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	
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행정지원 등) ① 인천광역시	제2조(행정지원 등) ①
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재단	
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(이하	
"센터"라 한다)의 원활한 사업수	
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	
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	
지원을 하거나, 「과학기술기본법	, <u>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</u>
시행령」(이하"영"이라 한다) 제	시행령」(이하"영"이라 한다) 제5
24조의4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	조의7제3항
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.	
② 시장은 영 <u>제24조의4제3항</u> 에	② <u>제5조의7제2항</u> -
따라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	
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	
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, <u>「과</u>	, <u>「중소기</u>
학기술기본법」제16조의4제1항의	업창업 지원법」제4조의7제1항 -
시책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	

현 행	개 정 안
정책 수립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	
킬 수 있다.	.
제3조(출연금 등의 지원) ① 시장	제3조(출연금 등의 지원) ①
은 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6조의4	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4조의
<u>제4항</u> 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	<u> 7제4항</u>
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	
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	
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과학기술기본법 ○ 제16조의4(기술창업 활성화 등) 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○ 제24조의4 삭제 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○ 제4조의7(기술창업 활성화 등) 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○ 제5조의7(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) "내용은 별지 작성"
관련법규 정비대상	"해당사항 없음"
특이사항	"해당사항 없음"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과학기술기본법

- 제16조의4(기술창업 활성화 등)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, 신기술,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 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, 중소·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2.>
 -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 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2. 22.>
 -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2. 22.>
 -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5. 12. 22.>

[본조신설 2014. 5. 28.]

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

제24조의4 삭제 <2020. 2. 18.>

부칙 <제30436호, 2020. 2. 18.> (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)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.

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- 제4조의7(기술창업 활성화 등)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, 신기술 등에 기반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,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
 - 2.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
 - ·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
 - 3.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
 - •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
 - 4. 지역의 예비창업자,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·금융·고용·특 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
 - 5. 창의적인 아이디어,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
 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
 -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 -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·해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, 8, 20.]

부칙 <제16524호, 2019. 8. 20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담기관은 제4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

- 제5조의7(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) 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선임한다.
 - 1. 제5조의6제1항제1호의 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경우: 공공기관 등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
 - 2. 제5조의6제1항제2호의 비영리법인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경우: 비영리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
 - ② 시·도지사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관할 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, 관할 지역의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.
 - ③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·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.
 -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당·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. 2. 18.]

부칙 <제30436호, 2020. 2. 18.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」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선임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제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가.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가.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제1항제1호에 해당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가.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

4. 작성자

일자리경제본부 청년정책과장 권영현